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10
----------	------

제출일자 : 2021. 11. 9.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사유

○ 논공읍 공단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 논공읍 공단출장소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시설물의 기능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 복합청사를 조성하여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물 내 설치되는 청년창업 지원센터를 통해 달성군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인구 유입에 이바지하고자 함.

○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정비사업

-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의 심각한 외부균열과 누수의 발생으로 건물의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 동 위치에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을 재건립(취득)하여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주민들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 옥포 본리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 마을 내 주·정차 차량이 많으나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생활에 불편 초래함
- 마을 주민들의 주차장 신설 건의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하고 향후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

-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 낙·경·청(樂·敬·淸)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선비문화체험관의 1층 필로티 공간을 홍보관 및 기념품 판매 공간으로 구성하고
- 이에 따른 주차 면적 확보를 위해 인근 부지 추가 매입(779.1㎡ → 1496.1㎡)으로 체험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농촌체험교육장 및 육묘장 조성

- 도시민을 대상으로 폐교를 활용한 농촌체험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정서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
- 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을 위한 농촌체험교육장 조성 및 꽃묘 생산 확대를 위한 육묘장 조성하고자 함

2. 관련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논공읍 공단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 위 치 : 논공읍 북리 1-130번지
- 기 간 : 2021. 4. ~ 2024. 2.
- 규 모 : 부지면적 897㎡, 건축 연면적 1,425.4㎡(지하 1층/지상3층)
- 주요시설 : 논공읍출장소, 예비군 읍대사무실, 청년창업 지원센터
- 총사업비 : 5,200백만 원(군비)
 - 공사비 4,390, 설계비 210, 감리비 250, 시설부대비 10, 철거비 90, 예비비 250

○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정비사업

- 위 치 : 유가읍 양리 287-1번지 외 2필지(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 기 간 : 2021. 9. ~ 2023. 5.
- 규 모 : 연면적 282.33㎡, 건물 1동(지상2층)
- 주요시설

층별	면적(㎡)	내부 시설	비 고
2층	205	전시관, 영상실	조정석 연출
1층	77	관리실, 기계실, 화장실	

- 총사업비 : 1,193백만 원(군비)
- 설계·감리비 88, 건축비 1,033, 철거비 62, 이전 및 물품 보관비 10

○ 옥포 본리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 위 치 : 옥포읍 본리리 2384-4번지 외 2필지
- 기 간 : 2022. 1. ~ 2022. 12.
- 규 모 : 1,107㎡(주차면수 32면정도)
- 총사업비 : 1,550백만원정도(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군비)

○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

- 위 치 : 옥포읍 기세리 599 외 4필지
- 사업규모 : 지상3층, 연면적 849.54㎡ (대지면적 1,496.1㎡)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송해기념전시관, 체험실, 하늘정원, 카페 등
- 사업기간 : 2019. 8. ~ 2022. 6.
- 사 업 비 : 2,870백만 원(국 680, 시 336, 군 1,854)
- ※ 사업비 증액 : 770백만 원
- 주차장부지 토지 매입비 : 600백만 원 정도
- 홍보관 및 기념품 판매 공간 공사비 : 170백만 원 정도

○ 변경개요

구분 사업개요		당 초	변 경(안)	증 가	비 고
위 치 및 면 적	기세리 598	251	좌동	-	
	기세리 599	440	좌동	-	
	기세리 523-3	-	717	증) 717	주차장 추가매입 토지 (지목: 유지)
	기타 (대부, 편입)	88.1	좌동	-	
	계	779.16	1496.1	증) 717	
연면적		711.16㎡	849.54㎡	증) 138.38	1층 필로티 (주민판매 공간조성)
사업기간		2019. 8. ~ 2022. 5.	2019. 8. ~ 2022. 6.		
총사업비(백만원)		2,100	2,870	증) 770 (균비)	

※ 총면적 30% 이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요구

○ 농촌체험교육장 및 육묘장 조성

- 위 치 : 유가읍 달창로28길 31(유가초 한정분교 폐교)
- 기 간 : 2022. 01. ~ 12.
- 규 모 : 부지면적 15,531㎡ ※ 기존 건물 8동(연면적1,484.2㎡)
- 주요시설 : 온실(교육장 및 육묘장), 자연학습체험장 등
- 총사업비 : 6,200백만 원(균비)
- 부지매입 6,000백만 원, 공사비 200백만 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취 득	계				6 (9)	20,546	6,889,425	6 (9)	20,546	6,889,425
	1.매입	토지			3 (6)	17,355	301,259	3 (6)	17,355	301,259
		건물			1	1,484	195,166	1	1,484	195,166
	2.교환	토지								
		건물								
	3.기타	토지								
		건물			2	1,707	6,393,000	2	1,707	6,393,000
	계									
	4.매각	토지								
		건물								
처 분	5.양여									
	6.교환	토지								

2022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제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건물)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논공읍	북리	1-130	1,425	5,200,000,000	2024. 2.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차량터	달성군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수	충혼탑 재건립
2 (건물)	문화 및 집회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유기읍	양리	287-1 288-2 산44-7	282.33	1,193,000,000	2023. 5.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건립공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재건축
3	답	답	옥포읍	본리리	2384-4	427	107,475,900	2022. 8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17	최언지	
4	답	답	옥포읍	본리리	2382-1	635	97,663,000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옥계길 34-6	최우찬	
5	구거	구거	옥포읍	본리리	2538	45	2,857,500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851	곽홍재	
												국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6	유지	유지	육포읍	기세리	523-3	717	총: 93,263,500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69,393,500원 (170,500원×407㎡) 개발제한구역 23,870,000원 (77,000원×310㎡)	2022.3.	선비문화 체험관 주차장 부지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 공사	
7 (토지)	학교 용지	학교 용지	유가읍	한정리	224-1 221-1	15,179 352	3,054,947,700 (196,700원× 15,531㎡)	2022.3	농촌체험교 육장 및 육묘장 조성		대구광역시(교육감)	
8 (건물)	학교 용지	학교 용지	유가읍	한정리	224-1	1,484.2	195,166,000 (시기표준액)					

위 치 도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30번지



현 장 사 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30번지



위 치 도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건립공사】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양리 288-2번지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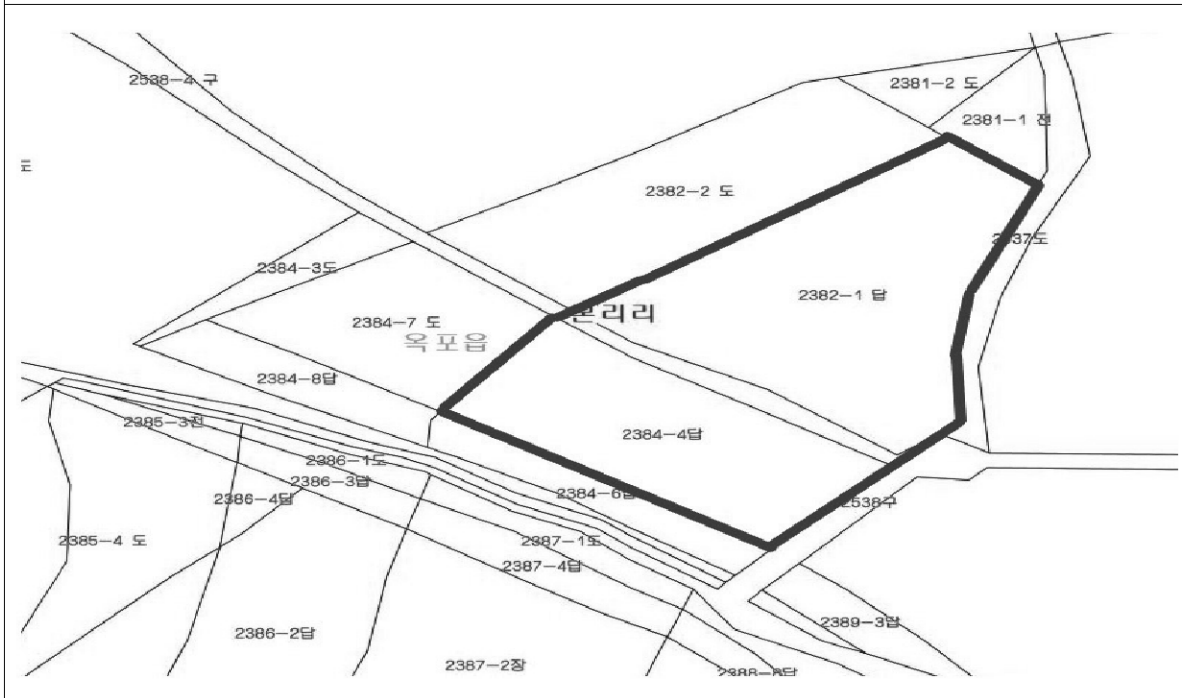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양리 288-2번지



위 치 도

【옥포 본리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2384-4번지 외 2필지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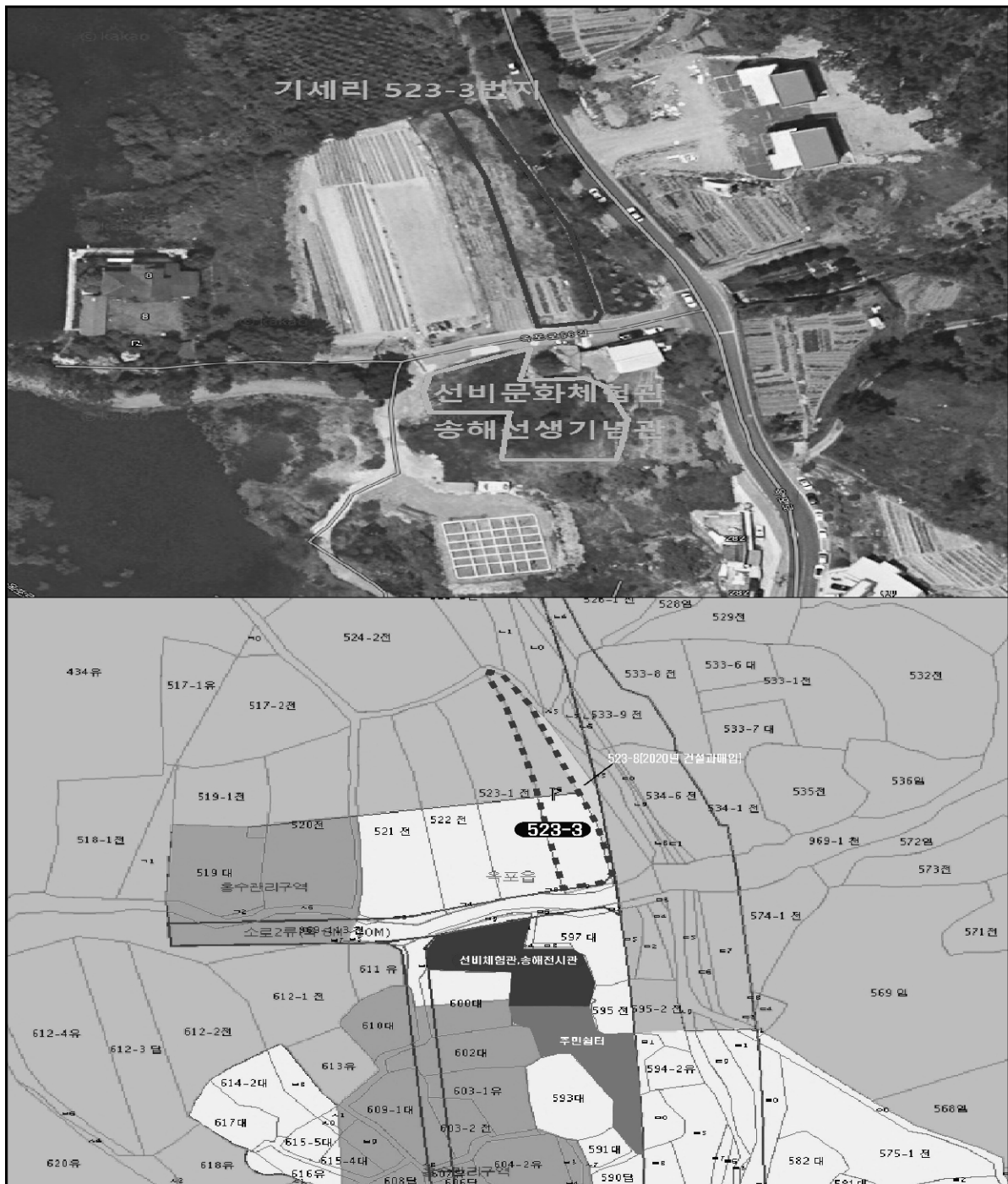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2384-4번지 외 2필지



위 치 도

【선비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523-3번지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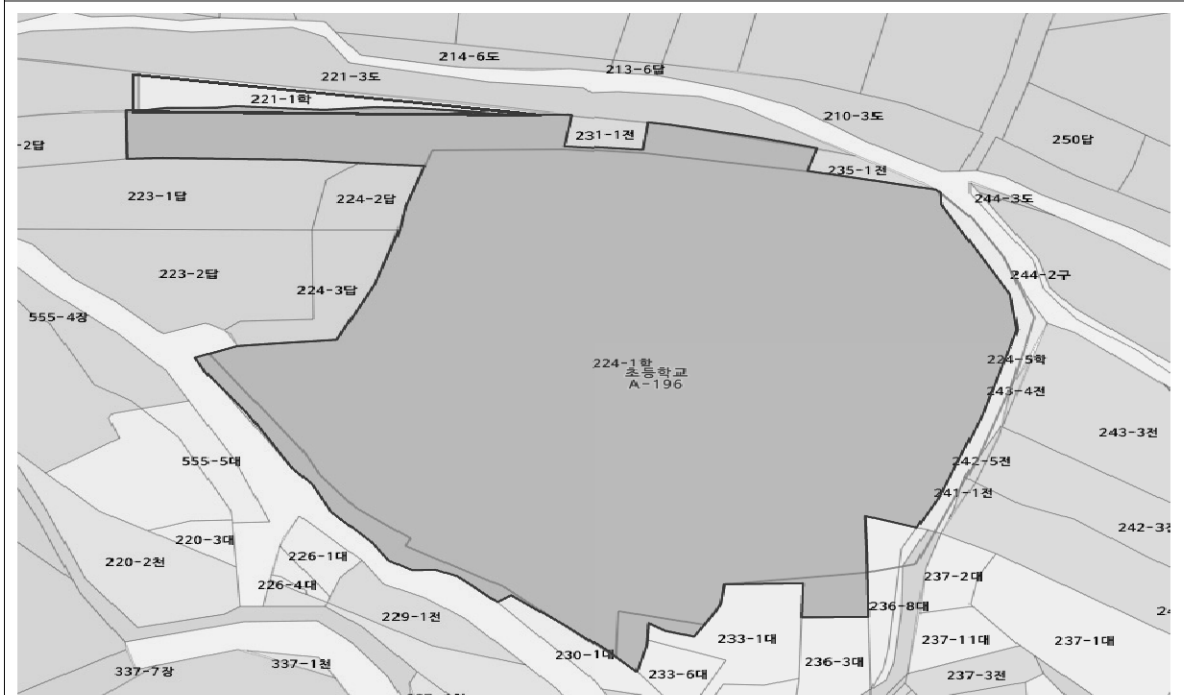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523-3번지



위 치 도

【농촌체험교육장 및 육묘장 조성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224-1, 221-1번지



현 장 사 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224-1번지 일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 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기술센터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 12. 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농촌지도사업)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작목에 대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이에 따른 성과의 전파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3. 새기술 실증시험 지역 적용사업
4. 농촌자원의 발굴 및 육성사업
5.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지원 사업
6.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관련단체 육성 및 활동(대회, 행사, 농업인의 날 등) 지원 사업
7.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지원 사업
8. 도·농상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소비자 교육 및 지원 사업
9. 종자·종묘·종균·미생물 등 보급사업
10.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참달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